

「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박종욱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, 2016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조례 입법의 원칙에 부합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평창군의회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띄어쓰기
 -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→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-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(안 제2조)
 -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
-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(안 제3조)
 -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에 대하여 규정(안 제4조)
 -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, 위원장 대행은 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장기재직자, 연장자 순으로 함.
-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(안 제5조)

3. 관련법령(또는 참고자료)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56조

4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및 조례 입법의 원칙에 부합하게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평창군의회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,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,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【관계 법령】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54조(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) 제48조제1항,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(이하 이 조에서 "의장등의 선거" 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가지로 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